

『2016회계연도 광주시 통합 결산』

결산검사의견서

수 신 : 광주시장

2016회계연도 광주시 통합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7년 4월 21일 ~ 5월 10일(20일간)

○ 검사위원

- 대표검사위원 : 유지호 (광주시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유동철 (전 광주시의회 의원)
- 검 사 위 원 : 오동엽 (오동엽 세무사사무소)
- 검 사 위 원 : 김희호 (대교회계법인)
- 검 사 위 원 : 장종은 (한빛세무법인 경기광주지점)

광주시결산검사위원회

목 차

I	결산검사 의견서	-----	1
II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	2
III	결산검사 경과	-----	3
IV	결산검사 결과	-----	5
V	주요 지적사항	-----	31
VI	전년도 검사결과조치내용	-----	46
VII	결산총평	-----	49
VIII	우수사례	-----	51

I. 결산검사 의견서

광주시장 귀하

2017년 5월 10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광주시 의회로부터 광주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2017년 4월 21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는 2016회계연도 광주시의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와 광주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광주시가 작성하여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유 지	홍 (서명)	검사위원	유 동 철 (서명)
검사위원	김 희 호 (서명)		검사위원	오 동 엽 (서명)
검사위원	장 종 은 (서명)			

II. 결산검사의 기본방향 및 범위

1. 기본방향

가. 재정확보방안 모색

- (1) 지방 자주재원 세원의 근간이 되는 세원의 추적 및 징수를 위한 세무자료 관리의 적정성 여부
- (2) 지방세의 과세처분 및 체납세액 관리의 적정성 여부

나.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 (1) 예산 편성과 집행·관리의 효율성 및 적정성 여부
- (2) 보조금 운영관리 적정성 여부
- (3) 재정운영의 수지·균형유지
- (4) 투자 사업비 배분의 타당성 및 형평성 확보
- (5) 채권·채권관리의 적정성 여부
- (6) 행정서비스의 경제성 및 효율성 제고
- (7) 인적자원관리의 능률성 및 사기 진작 대책

다.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 모색

- (1) 은닉 재산 발굴과 공유재산의 보존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
- (2) 물품 수급의 효율성 확보와 운용관리

2. 결산검사 범위

가. 대상기간 : 2016. 1. 1.~ 2016. 12. 31.

나. 결산검사 내용

-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사항
- (2) 계속비·명시 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사항
-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사항
- (4) 공유재산, 물품 및 기금의 결산
- (5) 금고의 결산

III.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17. 4 . 21.(금) ~ 5. 10.(수) (2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분 야	비고
대표위원	유지호	- 결산관련 서류 및 장부정리 등	2017. 3.14 위촉
검사위원	유동철	- 세 입 분 야 등	“
검사위원	김희호	- 물품관리, 채권·채무·기금관리 등	“
검사위원	오동엽	- 보조금 및 공유재산 등	“
검사위원	장종은	- 세 출 분 야 등	“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가. 결산검사 관계자 회의

- 일 시 : 2017. 4. 4.(화) 14:00
- 장 소 : 광주시의회 “유지호” 대표위원 사무실
- 회의내용
 - 검사기간 결정 : 2017. 4. 21. ~ 2017. 5. 10.(20일간)
 - 위원별 담당업무 협의 및 결산검사 방향 결정
 - 결산검사일정 결정

일 정	검 사 내 용	비고
2017. 4. 21. ~ 4. 23.	○위원별 검사 분야에 대한 자료수집 ○제장부 및 증빙서 열람 등 서면검사 실시	
2017. 4. 24. ~ 4. 28.	○결산검사 분야별 수집자료 검토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검사 실시	
2017. 4. 29. ~ 5. 10.	○결산검사 결과 보완 및 종합검토 의견조정 ○결산검사의견서 제출	

나. 결산검사 진행

- 대표위원의 책임으로 결산 검사반을 편성하여 운영
- 결산검사는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제반장부 및 증빙서 등을 열람하여 검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들이 토의를 통하여 의견 조정
- 의문이 있거나 위법성 등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 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
- 협의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협의회 개최
- 다수의견과 달리하는 소수의견도 존중

다. 1차 결산검사 결과 의견 조정회의

- 일 시 : 2017. 4. 28(금) 14:00
- 장 소 : 광주시의회 “유지호” 대표위원 사무실
- 회의내용
 - 의견취합 및 조정·보완 및 검사의견서 초안 방향 제시

라. 2차 결산검사 결과 의견 조정회의

- 일 시 : 2017. 5. 11(목) 14:00
- 장 소 : 광주시의회 “유지호” 대표위원 사무실
- 회의내용
 - 검사의견서 초안 확인 및 검사의견 조정

마. 3차 결산검사 결과 종합검토 회의

- 일 시 : 2017. 5. 15(월) 17:00
- 장 소 : 광주시의회 “유지호” 대표위원 사무실
- 회의내용
 -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 검사결과 종합 검토 및 의견서 작성

IV. 결산검사 결과

1. 광주시 재정의 개황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일반회계	세입	571,412,774	556,048,788	559,613,649	643,940,277	818,119,268
	세출	494,816,902	493,383,130	487,418,175	524,242,527	596,950,516
	결산상잉여금	76,595,872	62,665,658	72,195,474	119,697,750	221,168,752
특별회계	세입	201,464,331	149,613,492	160,179,407	183,110,466	205,598,340
	세출	160,067,090	112,913,290	126,052,500	136,626,307	134,208,410
	결산상 잉여금	41,397,240	36,700,202	34,126,907	46,484,160	71,389,930
기금	수입	30,768,646	26,400,396	40,817,881	28,064,996	18,761,816
	지출	30,654,949	26,400,396	40,653,104	28,064,996	18,160,336
	결산상 잉여금	113,697	0	164,777	0	601,480
총 계	세입(수입)	803,645,751	732,062,676	760,610,936	855,115,739	1,042,479,424
	세출(지출)	685,538,941	632,696,816	654,123,778	688,933,829	749,319,262
	결산상 잉여금	118,106,810	99,365,860	106,487,158	166,181,910	293,160,162

지난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16회계연도의 재정규모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지방소득세 등 세입 증가함에 따른 세수증가로 세입이 크게 늘게 되는데 기인함.

- 일반회계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 년도에 1,821천원임.

- 광주시의 현 년도 순수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 즉,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간의 전출금 및 전입금 등 회계간의 내부거래와 공

채발행, 차입, 채무상환이나 전년도 이월이나 다음해 이월금을 차감한 순계 개념의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의미함.

지난 4년간 통합재정수지는 매년 안정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6년도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은 작성 시기 미도래(2017. 하반기)로 기재하지 않았음.

최근 4년간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세입	금 액	642,595,377	554,202,800	613,159,834	703,123,883
	전년대비	50,451,590	△88,392,577	58,957,034	89,964,049
세출	금 액	594,976,145	533,497,956	572,514,758	601,602,506
	전년대비	65,758,194	△61,478,189	39,0163,802	29,087,748
수지	-	47,619,232	20,704,844	40,645,076	101,521,378
통합재정수지비율	-	0.08	0.039	0.071	0.169

※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e-호조 시스템에서 자동 산출된 자료임

$$\text{※ 통합재정 수지비율} = \frac{(\text{세입} - \text{지출 및 순융자})}{\text{통합재정규모}} \times 100$$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 천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6년	3,098,546,503	90,869,518	3,007,676,985	790,176,191	626,153,827	164,022,364	
2015년	2,886,812,633	117,424,480	2,769,388,152	670,910,523	590,774,286	80,136,236	
증감	211,733,870	△26,544,962	238,288,833	119,265,668	35,379,541	83,886,128	

2016년 순자산은 전년대비 238,28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 운영차액 또한 전년대비 83,886백만원이 증가하였음.

광주시 자치단체의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비고
자치단체 채무계 a(b+c+d)	86,411	81,911	71,000	52,943	44,443	
공채 b	0	0	0	0	0	
차입금 c	86,411	81,911	71,000	48,500	40,000	
채무부담행위 d	0	0	0	4,443	4,443	
지방공기업 채무 e	31,836	45,037	49,763	46,325	35,801	
채무총합계 f(a+e)	118,137	126,948	120,763	99,268	80,244	

최근 5년간 채무증감사항을 보면 감소추세에 있으며 2015년도의 채무총액은 99,268백만원이었고, 2016년도의 채무총액은 80,24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9,024백만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증가하여 광주시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봄.

2. 세입세출 결산

가.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인잔액	비 고 (순세계잉여금)
합 계	947,957,404	1,023,717,608	731,158,926	292,558,682	143,087,686
일반회계	745,137,170	818,119,268	596,950,516	221,168,752	87,999,080
특별회계	202,820,234	205,598,340	134,208,410	71,389,930	55,088,606

세입 결산액은 1,023,717,608천원, 세출 결산액은 731,158,926천원이며, 차인잔액(순세계잉여금 포함)은 292,558,682천원, 순세계잉여금은 143,087,686천원임.

(1) 세 입

(단위 : 천원)

회계명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947,957,404	1,105,391,099	1,023,717,608	81,673,491	8,120,147	73,553,344
일반회계	745,137,170	886,144,107	818,119,268	68,024,839	7,758,522	60,266,317
특별회계	202,820,234	219,246,992	205,598,340	13,648,652	361,625	13,287,027

- 2016회계연도 광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결과를 보면,
-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16.6%인 947,957,404천원
 -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7.9%인 1,023,717,608천원
 - 결손처분액은 8,120,147천원으로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면 행방 불명,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결손 처분한 것이 대부분임.

- 일반회계의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의 83.2%인 68,024,839천원이며, 그 중 지방세의 미수납액이 47.2%인 38,567,326천원이고, 세외수입이 36.0%인 29,457,513천원임.
-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의 16.7%인 13,648,652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하수도사업)가 각각 629,417천원, 8,856,498천원, 기타특별회계(교통사업)가 4,062,086천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0,651천원임.
- 수납액은 광주시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정확히 부합되고 있음.

(2)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이월액	집 행 잔 액	비 고
합 계	947,957,404	731,158,926	147,557,841	69,240,637	
일반회계	745,137,170	596,950,516	131,502,349	16,684,305	
특별회계	202,820,234	134,208,410	16,055,492	52,556,332	

- 2016회계연도 광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 지출액은 예산현액 947,957,404천원 대비 77.1%인 731,158,926천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5.5%인 147,557,841천원이고, 7.3%인 69,240,637천원을 집행잔액(보조금포함)으로 표시하였음.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전체 집행잔액의 24.0%인 16,684,305천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전체 집행잔액의 16.9%인

11,734,166천원으로 특별회계별 내역을 보면,

- 기타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 교통사업 특별회계 1,749,976천원,
-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820천원,
- 주민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1,439,913천원,
-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 5,700천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5,922천원,
- 수질개선 특별회계 4,092,317천원,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267,721천원,
- 기반시설 특별회계 2,074천원,
- 도시개발 특별회계 4,164,723천원으로 표시되고 있음.

○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사용 잔액, 순세계 잉여금은 표와 같음.

(단위 : 천원)

회 계 명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합 계	292,558,682 (683,000)	13,052,654	4,621,904	129,200,282 (683,000)	2,596,155	143,087,686
일반회계	221,168,752 (683,000)	12,720,394	3,712,500	114,386,454 (683,000)	2,350,323	87,999,080
특별회계	71,389,930	332,260	909,404	14,813,828	245,832	55,088,606

※ () 자금 없는 이월금액은 미포함

나. 일반회계

(1) 세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결산액	745,137,170	886,144,107	818,119,268	7,758,522	60,266,317
결산확인액	745,137,170	886,144,107	818,119,268	7,758,522	60,266,317
차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818,119,268천원은 예산액의 109%로서 72,982,098천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지방세는 자동차(주행분) 215억원, 지방소득세 54억원, 담배소비세 71억원, 과년도수입 38억원이 증가요인이고,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등 23억원, 쓰레기봉투 19억원, 징수교부금 29억원, 이자수입 14억원, 그 외수입(위탁사업비) 82억원, 과년도수입 10억원 등 꾸준이 증가하고 있음.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2.3%가 높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7,758,522천원으로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서 납부의무자의 사망, 행방불명, 거소 불명, 무재산 등으로 발생되었음.

○ 세입결산액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818,119,268	818,119,268	0

세출결산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일반회계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천원,%)

연도별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 대비 징수결정비율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	징수결정대비 불납결손비율
2016년	745,137,170	886,144,107	818,119,268	7,758,522	118.9	92.3	0.8
2015년	592,418,384	712,510,148	643,940,277	7,759,116	120.2	90.3	1.0
증감	152,718,786	173,633,959	174,178,991	-593,480	-	-	-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계	745,137,170	886,144,107	818,119,268	7,758,522	60,266,317	
지방세	소계	226,370,000	304,657,945	266,090,620	4,459,666	34,107,661
	보통세	218,870,000	272,049,717	254,818,205	237,711	16,993,801
	지난년도 수입	7,500,000	32,608,228	11,272,414	4,221,954	17,113,860

세외수입	소계	42,971,570	92,887,126	63,429,613	3,298,857	26,158,656
	경상적세외수입	21,780,794	31,173,427	30,722,620	0	450,807
	임시적세외수입	21,190,776	61,713,699	32,706,993	3,298,857	25,707,849
지방교부세		75,832,093	82,390,878	82,390,878	0	0
조정교부금 등		55,048,285	61,982,061	61,982,061	0	0
보조금	소계	198,476,936	198,963,705	198,963,705	0	0
	국고보조금등	138,795,209	139,209,976	139,209,976	0	0
	시·도비보조금등	59,681,727	59,753,729	59,753,729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소계	146,438,286	145,262,392	145,262,392	0	0
	보전수입등	120,874,250	119,697,751	119,697,751	0	0
	내부거래	25,564,036	25,564,641	25,564,641	0	0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32.5%인 266,090,620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63,429,613천원이 수납되었다. 지방교부세는 10%인 82,390,878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61,982,061천원, 보조금등은 198,963,705천원이 수납되었다.

(2)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이월 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산액	692,353,789	52,783,381	745,137,170	596,950,516	131,502,349	16,684,305
결산확인액	692,353,789	52,783,381	745,137,170	596,950,516	131,502,349	16,684,305
차액	0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692,353,789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52,783,381천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745,137,170천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액은 47,876천원이었으며 예산전용의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부족분”, 기업지원과 “공공직접일자리 발굴사업사업비”와 주택과 “수선유지급여사업비중 미편성 긴급보수비”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하였다.

예비비사용액은 19,468천원으로서 지출내역에 있어 산림과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한 예비비 지출이 있었다.

(단위: 천원)

회계명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일반회계	6,374,467	50,001	19,468	-	30,533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에 해당하는 596,950,516천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31,502,349천원으로서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2,720,394천원, 사고이월액은

3,712,500천원이고 그 주요내용은 “어린이안심통학로유니버설디자인시범사업 등” 사업비가 4회 추경에 내려오는 등 행정절차기간 및 공기부족 등에 기인함.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23%에 해당되는 16,684,305천원이었으며 불용액 발생의 주요사유는 행정서비스현장 관련 보상금 등 지급사유 미발생에 기인함.

○ 세출예산액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596,950,516	596,950,516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2015년 지출액	2016년 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합 계	524,242,527	745,137,170	596,950,516	19.88	72,707,989	13.86
일반공공행정	46,592,001	64,461,646	54,885,477	14.85	8,293,476	17.80
공공질서 및 안전	3,390,240	11,140,288	8,245,809	25.90	4,855,569	143.22
교육	9,307,835	9,399,999	9,378,554	0.22	70,719	0.75
문화및관광	30,074,060	49,792,727	32,978,966	33.76	2,904,906	9.65
환경보호	18,152,120	25,334,001	22,777,551	10.09	4,625,431	25.48
사회복지	201,112,807	218,720,340	213,676,178	2.30	12,563,371	6.24

보건	11,101,952	15,153,157	12,520,961	17.37	1,419,009	12.78
농림해양수산	18,110,345	24,788,692	21,491,358	13.30	3,381,013	18.66
산업·중소기업	3,368,332	5,189,913	4,665,744	10.09	1,297,412	38.51
수송및교육	81,569,630	147,665,113	97,422,239	34.02	15,852,609	19.43
국토및지역개발	20,873,218	79,238,345	32,584,421	58.87	11,711,203	56.10
기타	80,589,987	94,252,949	86,323,260	8.41	5,733,273	7.11

2016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사회복지 213,676,178천만원, 수송및교육 97,422,239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수송 및 교육 15,852,309천원이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공공질서및안전로 전년대비 43.22%가 증가하였다.

다. 특별회계(직영 공기업포함)

(1)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 계	184,617,496	219,246,992	205,598,340	361,625	13,287,027
공기업특별회계	135,660,870	159,935,591	150,449,878	0	9,485,915
상수도공기업	50,833,080	65,835,284	65,205,867	0	629,417
하수도공기업	84,827,790	94,100,307	85,243,809	0	8,856,498
기타특별회계	48,956,626	59,311,401	55,148,664	361,625	3,801,113
교통사업	3,916,930	9,400,946	5,338,859	361,625	3,700,462
의료급여기금	1,363,713	1,384,340	1,34,340	0	0
주민소득 지원사업	1,439,913	1,443,160	1,443,160	0	0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5,700	5,842	5,842	0	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39,943	345,127	244,476	0	100,651
수질개선	33,977,858	38,684,934	38,684,934	0	0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2,107,563	2,108,636	2,108,636	0	0
기반시설	47,153	56,083	56,083	0	0
도시개발	5,857,853	5,882,333	5,882,333	0	0
결산확인액	184,617,496	219,246,99	205,598,340	361,625	13,287,027
차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205,598,340천원은 예산액의 101%로서 20,980,844천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361,625천원으로 이는 주로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시효소멸 등으로 기인하였고 미수납액은 징수 결정액의 6%인 13,287,027천원으로서 이는 주로 납기미도래, 정리유예에 기인한 것임.

○ 불납결손처분

361,625천원이 발생되었으나 검사결과 처분사유가 적정하였음

○ 세입 결산액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205,598,340	205,598,340	0

각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음.

(2) 세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계		184,617,496	202,820,234	134,208,410	16,055,492	52,556,332
공기업특별회계		135,660,870	149,147,585	94,376,115	13,949,304	40,822,166
	상수도	50,833,080	61,512,481	33,660,051	13,949,304	13,903,127
	하수도	84,827,790	87,635,104	60,716,065	0	26,919,039
기타특별회계		48,956,626	53,672,649	39,832,295	2,106,188	11,734,166
	교통사업	3,916,930	3,916,930	1,992,104	174,850	1,749,976
	의료급여기금	1,363,713	1,363,713	1,357,893	0	5,820
	주민소득 지원사업	1,439,913	1,439,913	0	0	1,439,913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5,700	5,700	0	0	5,7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239,943	239,943	234,021	0	5,922
	수질개선	33,977,858	38,603,953	32,683,775	1,827,861	4,092,317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2,107,563	2,107,563	1,839,842	0	267,721
	기반시설계	47,153	47,153	45,079	0	2,074
	도시개발	5,857,853	5,947,781	1,679,580	103,477	4,164,723
결산확인액		184,617,496	202,820,234	134,208,410	16,055,492	52,556,332
차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예산액은 184,617,496천원이었으나 전년도이월액 18,202,738천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202,820,234천원이었음.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6%에 해당하는 134,208,410천원이었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 332,260천원, 사고이월 909,404천원, 계속비이월 14,813,82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진우배수지 확장 공사사업 등 공사기간 부족과 주민지원 광역사업-보조/복지증진사업 등 행정절차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7%에 해당하는 52,556,332천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예산 집행잔액 등으로 예산절감에 기인한 것임.

○ 세출결산액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34,208,410	134,208,410	0

세출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3. 재무제표의 결산

2016회계연도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886,813	3,098,547	211,734	7.33

I. 유 동 자 산	250,904	377,220	126,316	50.34
II. 투 자 자 산	9,965	10,079	114	1.14
III. 일 반 유 형 자 산	299,564	308,614	9,050	3.02
IV. 주 민 편 의 시 설	362,606	370,231	7,625	2.10
V. 사 회 기 반 시 설	1,958,912	2,027,303	68,391	3.49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4,861	5,099	238	4.90
부 채	117,424	90,870	-26,554	-22.61
I. 유 동 부 채	21,781	20,365	-1,416	-6.50
II. 장 기 차 입 부 채	81,730	59,436	-22,294	-27.28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13,913	11,069	-2,844	-20.44
순 자 산	2,769,388	3,007,677	238,289	8.60
I. 고 정 순 자 산	2,528,270	2,637,142	108,872	4.31
II. 특 정 순 자 산	24,715	27,216	2,501	10.12
III. 일 반 순 자 산	216,402	343,318	126,916	58.65

2016회계연도 말 광주시의 총자산은 3,098,547백만원이고, 총부채는 90,870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3,007,677백만원이며,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자산이 377,220백만원(12.17%)이고,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 유동자산이 2,721,327백만원(87.83%)으로 비 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77,457백만원(2.50%), 단기금융상품 223,818백만원(7.22%)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미수채권인 미수세금은 34,108백만원,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 채권인 미수세외수입금은 39,718백만원, 재고자산 670백만원, 기타유동자산 7,577백만원이며 결손을 예상한 대손충당금이 6,690백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10,079백만원(0.33%), 일반유형자산 308,614백만원(9.96%), 주민편의시설 370,231백만원(11.95%), 사회기반시설 2,027,303백만원(65.43%), 기타비유동자산 5,099백만원(0.16%)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난해에 비해 211,734백만원의 자산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유동자산 126,316백만원(50.34%) 증가, 일반유형자산 9,050백만원(3.02%) 증가, 주민편의시설 7,625백만원(2.10%) 증가, 사회기반시설 68,391백만원(3.49%) 증가 등의 사유에 의한 것임.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20,365백만원(22.41%)이고, 장기차입부채가 59,436백만원(65.41%), 기타비 유동부채가 11,069백만원(12.18%)으로 비 유동부채가 총부채의 77.59%를 차지하고 있음.

지난해에 비해 △26,554백만원의 부채가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장기차입부채 △22,294백만원(△27.28%) 감소 등의 사유에 의한 것임.

요약 재정운영표 (기능별)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5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사업순원가 (가 - 나)	253,268	301,242	47,974	18.94
II. 관리운영비	78,992	82,858	3,866	4.89
III. 배분비용	48,264	16,325	-31,939	-66.18
IV. 배분수익	79,851	83,840	3,989	5.00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300,673	316,586	15,913	5.29
VI. 일반수익	380,809	480,608	99,799	26.21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80,136	-164,022	-83,886	104.68

기능별 재정 운영표에 의하면, 2016회계연도 광주시의 사업순원가는 301,242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82,858백만원), 비배분비용(16,325백만원) 및 비배분수익(83,840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316,586백만원임.

한편,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480,608백만원을 차감한 2016회계연도 광주시의 재정운영결과는 △164,022백만원임.

재정운영표(성질별)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비 용 총 계	590,774	626,154	35,380	5.99
Ⅰ. 인 건 비	83,653	87,537	3,884	4.64
Ⅱ. 운 영 비	158,625	187,407	28,782	18.14
Ⅲ. 정 부 간 이 전 비 용	20,314	19,042	-1,272	-6.26
Ⅳ. 민 간 등 이 전 비 용	252,738	276,880	24,142	9.55
Ⅴ. 기 타 비 용	75,444	55,288	-20,156	-26.72
수 익 총 계	670,911	790,176	119,265	17.78
Ⅰ. 자 체 조 달 수 익	323,284	387,765	64,481	19.95
Ⅱ. 정 부 간 이 전 수 익	320,484	371,434	50,950	15.90
Ⅲ. 기 타 수 익	27,142	30,977	3,835	14.13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	-80,136	-164,022	-83,886	104.68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87,537백만원(13.98%), 운영비 187,407백만원(29.93%), 정부간 이전비용 19,042백만원(3.04%), 민간 등 이전비용 276,880백만원(44.22%), 기타비용 55,288백만원(8.83%)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387,765백만원(49.07%)이고, 정부간 이전수익 371,434백만원(47.01%), 기타수익 30,977백만원(3.92%)으로 자체조달수익의 비중이 상

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음.

비용은 626,154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5,380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인건비 3,884백만원(4.64%) 증가, 운영비 28,782백만원(18.14%) 증가, 민간등 이전비용 24,142백만원(9.55%) 증가 등의 사유에 의한 것이며,

수익은 790,176백만원이며 이중 자체조달수익이 387,765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4,481백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정부로부터 이전 받은 수익은 371,434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50,950백만원 증가 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은 △164,022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83,886백만원 증가 함.

4. 성과보고서

광주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광주시는 본 회계연도의 '맑고 풍요로운 광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4개) - 정책 사업목표(66개)-단위 사업(140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6개의 정책 사업목표와 14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p)

구분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 수(B)	미달성 수	달성률 (B/A)
계	14	66	140	106	33	75.7
기획예산담당관	1	1	3	1	2	33
감사담당관	1	2	4	4	0	100
공보담당관	1	1	3	2	1	66
총무국	1	12	24	19	4	79.1
복지교육국	1	16	36	29	7	79.1
경제산업국	1	10	22	14	8	63.6
안전건설국	1	10	17	14	3	82.3
도시주택국	1	6	13	7	6	53.8
의회사무과	1	1	1	1	0	100

보건소	1	2	6	6	0	100
농업기술센터	1	2	5	4	1	80
차량등록사업소	1	1	2	2	0	100
시립도서관	1	1	2	1	1	50
청소년수련관	1	1	2	2	0	100

광주시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등 5개 기관은 100%를 달성한 반면, 기획예산담당관 33%, 도시주택국은 53.8% 달성에 그치는 결과를 보였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5. 결산서의 첨부서류의 결산

(1) 채권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4,800,368	225,932	181,375	4,844,925
일반회계	3,596,048	0	1,314	3,594,734
특별회계	572,824	57,584		630,408
의료급여기금	22,731	0	0	22,731
주민소득지원사업	550,093	57,584	0	607,677
기 금	631,496	168,348	180,061	619,783
자활기금	631,496	168,348	180,061	619,783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44,925천원으로 확인되었다.

(2) 채무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발생액	상환소멸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99,267,515	0	19,023,300	0	80,244,215
일반회계	52,942,715	0	8,500,000	0	44,442,715
특별회계	46,324,800	0	10,523,300	0	35,801,500
상수도	13,924,800	0	663,300	0	13,261,500
하수도	32,400,000	0	9,860,000	0	22,540,000

검사결과 채무는 전년대비 19,023,300천원이 감소한 80,244,215천원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채무의 상환 예정은 다음과 같다.

(3)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천원)

구 분	채무액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비고
합 계	80,244,215	14,086,884	13,752,146	11,586,345	7,694,400	33,124,440	
차입금	75,802,040	12,494,400	12,494,400	9,994,400	7,694,400	33,124,440	
채무부담행위	4,442,175	1,592,484	1,257,746	1,591,945	0	0	

(4) 기금현황

2016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현재
		계(A-B)	조성액(A)	사용액(B)	
합 계	41,185,199	3,339,282	5,006,246	1,666,965	44,524,480
통합관리기금	17,260,669	738,653	1,135,966	397,313	17,999,322
보훈기금	1,552,194	531	35,873	35,342	1,552,725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568,024	216,420	236,220	19,800	1,784,444
자활기금	1,677,245	44,550	183,095	138,545	1,721,795
노인복지기금	1,735,698	4,244	40,212	35,968	1,739,942
양성평등기금	3,092,285	17,742	71,352	53,610	3,110,026
체육진흥기금	660,572	1,409	15,223	13,814	661,981
식품진흥기금	628,892	△68,861	249,158	318,019	560,03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 주변 지역주민지원기금	7,014,518	250,818	514,797	263,980	7,265,335
재난관리기금	5,149,683	1,746,921	1,934,060	187,139	6,896,604
4-H후원회 기금	178,692	918,	4,118	3,200	179,611
농업인육성기금	605,313	314,038	314,038	0	919,350
옥외광고정비기금	61,414	71,899	272,134	200,235	133,313

검사결과 통합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의 2016년도말 현재액은 44,524,482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3,339,284천원이 증가한 것이다. 본년도에 기금의 지출액은 1,666,934천원이며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하였다.

(5) 공유재산

2016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 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 계		1,653,427,014	61,589,504	7,770,399	1,706,246,120
행정 재산	공용재산	293,900,019	7,902,372	79,731	301,722,660
	공공용재산	1,191,006,094	49,575,345	1,554,052	1,239,027,387
	기업용재산	42,714,594	0	0	42,714,594
	보존재산	3,692,836	794	0	3,693,630
	소 계	1,531,313,544	57,478,511	1,633,783	1,587,158,271
일반재산		122,113,469	4,110,993	7,136,616	119,087,847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보다 52,819,106천원이 증가한 1,706,246,120천원이다.

(6)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992	54	31	1,015
금 액	10,931,391	763,120	266,477	11,428,034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보다 496,643천원이 증가한 11,428,034천원이 확인되었다. 증가사유는 승용차 및 화물차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한 것이다.

(7) 성인지 결산

(가)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69	37,024,825	34,754,051	93.87
일 반 회 계	68	36,406,025	34,151,603	93.81
기타특별회계	1	618,800	602,448	97.36

(나) 사업별총괄표

(단위 : 개, 천원, %)

회 계 별		사업개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총 계		69	37,024,825	34,754,051	93.87
여성정책 추진사업	소 계	-	-	-	-
	일반회계	-	-	-	-
	기타특별회계	-	-	-	-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	소 계	66	36,102,207	33,846,853	93.75
	일반회계	65	35,483,407	33,244,405	93.69
	기타특별회계	1	618,800	602,448	97.36
자치단체 특화사업	소 계	3	922,618	907,198	98.33
	일반회계	3	922,618	907,198	98.33
	기타특별회계	-	-	-	-

○ 성인지 예산집행 검사 결과

광주시 성인지 예산은 총 69개 사업에 37,024백만원으로, 성인지 예산은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 노약자 및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보건서비스, 교통편익시설 강화사업과 생활체육 여건 개선을 통한 체육 서비스 증진사업을 중점적으로 집행하였음.

사업별로는 성별 영향분석평가 사업에 66개 사업 33,846,853천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에 3개 사업 922,618천원을 추진하였음.

V. 주요 지적사항

1. 지방보조금 관리 운용의 부적정

-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광주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 교부대상, 사용 등에 관하여 심의하는 기구임.
 - 위원회는 보조금 심의 이외에 광주시 지방재정심의대상인 투자심사, 용역 과제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공시와 주민참여 예산의 편성 및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하는 등 광주시 재정을 총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다만, 지방보조금 예산 및 그 밖의 용역사업 등과 관련된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으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위촉위원들의 대부분 자격이 미달되고, 위에서 언급한 광주시 재정전반에 걸친 업무에 관한 심의 등에 참여하여 심의함으로서 보조금등이 부실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
 - 따라서 광주시 보조사업을 포함한 투자사업 등 전반에 걸쳐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광주시 위원회 위원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①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한 내용과 지원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의 보

조금을 용도 이외 사용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산토록 되어 있으며,

《 사 례 》

- 광주시 ○○○○ 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16.01.25. 오전 ○시에 ○○·○○○○위원회 회의개최 후 ○명의 위원이 관내 식당에서 급량비 ○○,○○○원을 사용한 것으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
 - 실제 체크카드 사용은 회의 다음 날인 26일에 결제 처리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광주시에서는 민간단체의 보조금 정산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 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

② 광주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에 따라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제를 도입 시행(2007년 6월)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고 있으며,

- 2011년 보조금 카드관리시스템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결산검사 확인결과 보조단체의 상당수가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광

주시는 보조금 결제카드 사용 및 시스템 사용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됨.

- ③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중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 경우,
- 해당 각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에서 자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확인과 사업 후 보조금 정산검사에서 자부담 비용을 사용한 통장,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음.
 - 보조금에 관한 보조사업비는 보조금 전용통장으로만 하여야함에도 결산 보고서에는 보조금전용으로 관리하는 별도통장을 확인할 수 없었고 보조사업자가 관리기준에 상당부분 못미치게 운영되고 있는 등, 보조금에 대한 부실한 정산서류 및 기본적인 증빙서류조차 갖추고 있지 않는 등 민간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였다.
- ④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특정 관변단체 위주로의 편중지원되고 있어 단체간의 양극화를 심화 시키는 현실적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개선 및 권고사항】

- 광주시는 각종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교수등 위원의 전문가 비율을 확대하고, 형식적 심의를 탈피하여 실질적 심의를 통한 위원회의 순기능이 확대되도록 재정비 촉구.
- 보조금 정산검사 관련부서에서는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산검사를 통하여 회계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통한 용도이외의 사용 등 부적정한 사례에 대하여는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맞도록 <지출 및 보조금카드 사용 등>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2.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및 관리 소홀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광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여야 하며,
-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럼에도 광주시는 2016년도 성과평가를 작성함에 있어 중점 평가지표가 형식화되어 있어 정확한 평가를 측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성과평가에서 얻고자하는 사업 목적의 필요성과 합당성을 찾을 수 없어 성과평가서 지표 등에 대하여 전반적 정비가 요구됨.

《 사례 》

- ① 부서별 성과평가에 대한 검토내용 등이 구체화되지 않고, 보조금사업의 목적 및 계획 등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내용없이 수치로만 표기 되었으며,
- ② 특히, 문화공연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이 있어 보완, 개선하여야 할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성과평가 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사후평가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민간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매뉴얼에 따라 등록하여 3년간 관리 하여야 함에도 결산검사 자료에서는 관리부서의 대부분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는 향후 이에 대한 확인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3.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 지역보건의료사업 위원회 미흡

- 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장학금지급대상자 선정, 생활보장 긴급 지원심의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 지역보건의료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사업이며, 지역보건서비스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과 시민건강 전반에 관한 사업으로 각각의 위원회에서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 집행 등 적극적인 심의를 통하여 검토하여야 함에도
 - 위원회 운영을 서면심의로 처리함으로써 위 업무에 투자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부터 시행을 실효성 있게 운영치 못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지역보건의료사업 등 시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운영에 있어 형식적인 심의가 아닌 실질적인 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영을 통하여 위원회의 순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4. 국·도비 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 국·도비 보조금 집행에 있어 ○○○○○ 지원운영은 ○백만원으로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제3회 추경예산(도비 ○백만원, 시비 ○백만원)에 반영되었으나,

- 이후 변경(○백만원, 50%삭감) 내시 되었으나, ○백만원을 전액 집행하여 결산서상 도비 ○백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여 과오지급금으로 시도비 ○백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환수처리 하였음.
- ○○○○ 유지관리비(국비)는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내시된 사업으로 관련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 ○○과 ○○○ 유지관리비는 ○○○백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으며, ○○○○○○ 유지관리비는 ○○○백만원의 예산결산서상 마이너스 금액이 발생 한 것을 확인함.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부서간의 업무협조에 대한 절차등을 통하여 수령액 공문을 정확히 확인후 수납부서에 통보하여 세입 및 세출·보조금 결산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5.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및 자주재원 확충 방안 마련

- 광주시 공유재산(행정재산 18,898필지 7,844,861㎡, 일반재산 524필지 58,207,013㎡)을 관련 실과별로 관리함에 있어 재산 관리관은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제2항)되어 있으며,
- 은닉재산, 무단점유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가 미흡하여 대부료의 부과 및 무단 점유에 따른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적법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실질적 업무 실태를 확인한 바, 소관 관리부서의 관리실태 조사 내역이 주무 부서인 회계부서에 취합(정리) 되어있지 않아 누락된 재산의 발굴, 관리상태, 은닉재산, 무단점유,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등과 무단사용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유재산의 비효율적 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볼 수 밖에 없음.

【개선 및 권고사항】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전산 시스템구축을 통하여 정확하고 누락됨이 없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실태 파악 및 무단 점유중인 재산에 대하여 적정한 사용료 부과 등을 통한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함.

6. 일반농산개발사업 민간위탁 추진 부적절

- 광주시는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기반 시설 등을 ○개 권역 ○○개마을 농어촌지역개발사업(2009~ 2018년)을 추진하고 있음
 - 개발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백만원(국비, 지방비 30%)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그 밖에 ○개 읍면 사업은 2016년 - 2019년(○,○○○백만원) 사업내역을 확정하지 못하고 당초사업기간보다 상당기간 지연 처리되고 있음.
- 위 사업의 추진은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은 광주시장이 주관하고 ○○○○○공사는 기획기술지원단의 일원으로 개발계획수립, 설계, 공사감리분야에 대한 기술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광주시는 일반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자 선정에서 ○○ ○○○○○(○○, ○○, ○○○○○)와 위·수탁계약(수의계약)한 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 「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 1의2의 규정 및 같은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과 「광주시 ○○○○○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인 광주시가 전액 출자한 ○○○○○○공사에서 위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에도 광주시는 소극적이며 안이한 판단으로 ○○○○○○공사를 배제시켜 점진적 확장성의 필요조건 등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상실하고 있음에 대한 깊은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개선 및 권고사항】

- ① 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와 계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별도의 교부 결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법령 또는 개별규정에 명시된 사항이외의 계약심사 이행 등의 보조금 지급권자의 교부조건 등을 두고 있지 않고 사업의 계약 및 발주하였으며,
- 이에 따라 ○○○권역의 개발사업은 2016년까지의 사업에 대한 ○○·○○부분(○,○ ○○백만원)에 대한 설계심사 미 이행으로 ○○,○○○천원(계약심사 조정율 5.24%)의 예산이 추가 지급하여 예산이 낭비되었음.
 ※ 경기도 및 일반 2016년도 계약심사 조정율 12%임.
- ② 이에 대한 영향으로 설계변경(○○○백만원)에 대한 설계심사와 낙찰률을 적용 하지 않아 ○○,○○○천원 상당의 추가 지불에 따른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 ③ 요율 적용의 적정성에 있어 공사 등(측량, 설계, 감리의 위탁율) 요율을 적용하고 있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사업비 또한 하였음. 소요되었고,

- ④ 당초 위탁 처리기간이 상당 지연됨으로써 물가상승 등의 인상 요인이 발생돼 광주시 일반농산개발계획사업이 목적대로 기간 내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추가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등 합리적인 계약 및 공사 관리가 필요함.

7.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 법정도로 변의 중점관리지역(노상적치물)의 관리실태 등에 대한 기초자료와 단속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속권한 없는 단체에 단속토록 예산 집행한 것은 부적정함.

【개선 및 권고사항】

- 지금 추진하고 있는 위탁사업에 대하여 위에서 지적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용역비 회수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단속용역발주 등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법규등 숙지 및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구방안 마련

8. ○○○○장학회 운영

- ○○○○장학회 운영에 있어서는 기본재산 ○,○○○백만원이며, 출연금 내역을 살펴보면, 광주시 출연금이 ○,○○○백만원이고, 민간기부금은 ○,○○○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음.
- 그 중 ○,○○○백만원은 ○○○○은행에 고정금리(1.2%)로 예치되어 있고, 나머지 ○,○○○백만원은 ○○생명보험(주)에 종신행 연금상품(2.5~3.9% 변동금리)으로 ○○장학회 이사장 명의로 가입되어있음.

- ○○○○장학회(○○○)는 2014년 제3차 장학회 개최(2014년 11월 25일) 안건(제4안)으로 ‘기본재산 교체의 건’을 상정하면서 2014년 8월 29일 ○○생명보험주식회사와 ‘○○○ ○, ○○○○연금보험(무배당)’ 상속연금형으로 계약(○,○○○백만원)한 건을 소급하여 추인한바 있음.
- 위 건의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해당내용은 광주시 승인사항으로, ○○○○장학회에서는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권한행위 없이 조치하였으며,
- 또한,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광주시)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에서의 ○○생명보험회사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위의 행정처리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사료됨.
- 광주시 장학기금 출연금을 비율을 살펴보면 광주시의 출연금에 너무 의존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조 개선(회비 및 기부금 모금 활성화)이 절대적 필요하다고 보며,
 - 또한 장학기금 중 ○,○○○백만원을 종신형 연금상품(2.5~3.9% 변동금리)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금의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금운영의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등 여러 측면으로 보았을 때 적절하지 못했다 할 것이므로 기금운용 활성화에 대한 조치가 요구됨.

【개선 및 권고사항】

-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3(장학회에 대한 제재)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에 대한 조치 여부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승인 없이 상속연금계약 처리한 사항에 대한 사후처리 방안 마련

○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 필요

①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외로의 처리

②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기금 운용과 기금출납원 지정

9. 광주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강구(○○○○○○공사 활성화 방안)

- 광주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추진 내역을 살펴보면 광주시의 지방채(1,360억원)는 광주시 재정을 크게 위축시킬 한계에 와 있음에 재정지출의 감소는 지금까지 각종 사업추진 여력이 크게 줄어들게 하였음.
- 이같은 상황에서 광주시는 재정 상태에서 사업선정 등의 적정성을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광주시의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광주시의회에서는 의원 발의로 「광주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5.10.12일 개정(「지방채정법」 제52조에 따른 잉여금 중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지방채 상환예정액의 20%범위 내에서 관리채무부담도에 따라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하여 2016년말로 전년대비 24.4%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71,629백만원의 채무 부담을 갖고 있음.
- 따라서, 광주시는 채무관리와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자구력의 검토가 적극 요구된다 할 것임.
- ① 광주시의 재정자립도 제고에 따른 채무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적시성 있는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 광주시는 시의 행정재산 및 잡종 재산을 효능성 있게 관리·운영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행정재산으로써 사용의 효능성이 없는 재산(기부채납 토지 등)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매각하는 등 부채액을 최소화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② 또한, 수십 년 방치되고 있는 ○○○ 시유지에 대하여는 ○○○○○○로 하여금 주민편익사업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고, 민간사업에 공동 참여하는 기회 부여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요구됨.

③ 광주시에서 발주하는 도로사업의 ○○○○○○공사 위탁은 몇 차례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음에도 중단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광주시의 업무량을 줄여줌으로써 공무원 증원의 필요성이 없어져 인력예산 절감 및 사업비 절감 효과는 ○○○○○○공사의 자본금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성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공사를 활성화하는 것은 세외수입을 증가시키는 축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임.

【개선 및 권고사항】

- 광주시는 효능성이 없는 재산(기부채납 토지 등)은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여 매각하는 등 부채액을 최소화하는 자구노력 강구
- ○○○ 시유지에 대하여는 ○○○○○○공사로 하여금 주민편익사업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10. 세입예산의 효과적 추계로 광주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순세계잉여금 [(가)+(나)+(다)-(라)]	초과세입금 ㉠	자금없는 이월액 ㉡	집행잔액 ㉢	보조금 집행잔액 ㉣
2012년	18,489	4,329	0	17,359	3,199
2013년	13,999	△155	0	17,240	3,086
2014년	38,792	24,333	0	16,422	1,963
2015년	64,388	51,522	1,177	15,392	3,703
2016년	87,999	72,983	682	16,683	2,350

【문제점】

최근 2년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재정수입규모는 전년대비 2015년 15%, 2016년 27%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규모는 그 절반 수준인 7.5% 및 14% 증가하는데 그쳐서 잉여금이 66% 및 85%로 대폭 증가하여 2016년 결산상 잉여금은 221,168,752천원으로 세입액 818,119,268천원의 27%에 달하고 있음.

같은 기간내 순세계잉여금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4년 63%, 2015년 80% 그리고 2016년 83%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과도한 잉여금 발생의 주된 원인이 집행을 저조가 아니라 초과세수입이 명백하며 이로 인하여 예산편성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매우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함.

물론, 세입예산을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고, 그 성격상 다소 보수적으로 집계될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년 3~5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거액의 세수추정의 실패가 매년 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당초예산 편성시 관행적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계를 하고 있기 때문이며¹⁾ 그로 인하여 이후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세입예산 추정이 다소 느슨한 것으로 판단됨²⁾

【개선 및 권고사항】

- 위 사항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세수추계하기 바람

11. 각종 지원사업시행시 적극적인 참여유도

【문제점】

각종 지원사업시행(○○과 ○○○ ○○○○○○등)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여 다수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에만 의존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다수의 사업자들이 아닌 특정사업자에게 지원하게 되어 행정의 투명성을 해치게 하였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여 다수의 사업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람.

1) 일반회계 2015년 당초예산 444,677,018천원은 최종 세입액의 69%, 2016년 당초예산 472,641,852천원은 최종세입액의 58%에 불과함
 2) 2016년 부동산교부세 4,034,878천원은 세입예산상 미반영됨

12. 광주시 조성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문제점】

광주시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중에 대·내외 홍보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음. 예를들어 「한양삼십리누리길 조성사업」의 경우 타지역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사항을 찾을 수 없었고 또한,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조차도 「한양삼십리누리길」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한양삼십리누리길」 등 광주시에 홍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버스정보안내(BIS)시스템 등 광주시 뿐 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IV.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1. 집행잔액 과다 발생

(1) 전년도 권고사항

사업계획 수립시 사업의 타당성, 지역 여건성, 사업목적과 광주시가 지향하는 목표와 부합여부 등 사업 집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사업을 결정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시기 지연, 사업비과다 책정, 사업변경 및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미집행 및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업의 여건 숙지 미비로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므로 보다 세밀한 사업계획 과 예산 관련 법규 숙지가 요구됨.

향후 세출예산을 관리함에 있어 재원확보가 어려운 현실정을 감안해 볼 때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 변경 등 미집행이 예상되는 집행잔액, 특히 자체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 방안을 제고하여야 함.

(2) 조치 결과 및 검토

광주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시달 회의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특히, 단년도 사업의 경우 연내 집행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예산반영을 하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방안을 제고하고 있음.

2. 세입의 과오납반환액 저감대책 강구

(1) 전년도 권고사항

과세대상물건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로 과세대장을 즉시 정리 및 전산관리하여, 과세시 정확히 부과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임.

재산세는 과세당시 용도 현황을 면밀히 확인 분류하여 환급발생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소득세는 국세 경정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당해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 조치 결과 및 검토

2017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연간 정비계획(2017.1.16.)에 따라 농지 이용실태조사, 착공신고 토지 사실상 공사 진행 여부 확인,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이용여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세입 과오납 반환액이 최소화 하고 있음.

지방소득세는 매월(15일이후) 정기적으로 국세 경정자료를 전산통보 받아 감액 및 과오납건에 대해 우선처리하고 있으며 납세자 요청시 통보시한이 미 도래된 자료의 경우 세무서에 즉시 공문발송 협조요청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음.

3.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업무추진 철저

(1) 전년도 권고사항

2015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단축된 첫 해로 실과소 읍면동 간부공

무원 및 회계담당,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5회 실시하고 관련 책자 300여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나, 이월액 증가 및 보조금 정산으로 인한 세입조치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2016년도부터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행정조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특히, 연간용역계약 등의 경우 연내 용역준공 및 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2) 조치 결과 및 검토

2016. 11. 30.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 시행에 따른 출납폐쇄 예외규정으로 12월말 용역준공 및 정산에 따른 대금지급이 익년도 1월 20일까지 지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되었음.

세출예산집행기준을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개정된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 변경내용 등을 반영하여 안내하였으며,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음

Ⅶ. 결산총평

- 결산은 1년 동안의 세입과 세출에 있어 예산집행 활동에 대한 합리성, 적정성, 건전성 등 분석을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며 특히, 결산은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쓰였는지, 적재적소에 집행기준에 따라 잘 집행되었는지,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 따라서, 금번 결산검사에서는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예산집행의 성과분석과 광주시의회의 재정통제에 대한 기능성 효과등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

- 먼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분야의 경우 예산의 규모와 운영등이 다소 취약하였으며, 독립적이지 못할 뿐아니라 목적 성취를 위한 관심과 활동 등이 결여되어 있다.

- 또한, 민간보조금(위탁금)사업 추진에 있어 광주시는 각종 문화행사등 다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주시○○○(자체 직원○명)에 위탁하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세부추진계획서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 예산의 집행과 정산 시 증빙서 첨부과 성과평가에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고 불투명하였음.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내용이 미흡하고, 중장기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정과 실행에 대한 종합관리 그리고 주요사업 우선순위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국·도비 요청사업 및 대규모사업관리에 관한 사업비 신청내용이 합리적이지 못하고 다소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 **세입 분야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다음연도 이월액
결산액	947,957,404	1,105,391,099	1,023,717,608	81,673,491	8,120,147	73,553,344
결산확인액	947,957,404	1,105,391,099	1,023,717,608	81,673,491	8,120,147	73,553,344
차액	-	-	-	-	-	

□ **세출분야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이월 사업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산액	876,971,285	255,603,615	947,957,404	731,158,926	147,557,841	69,240,637
결산확인액	876,971,285	255,603,615	947,957,404	731,158,926	147,557,841	69,240,637
차액	-	-	-	-	-	-

- 결산검사시 광주시의 세입 및 세출분야를 검사한 결과 오류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앞에서 언급한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따른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는 물론 보다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의 낭비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지방재정운영의 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Ⅷ. 우수사례

- 원활한 국·공유지 관리를 위한 -

1. 중부고속도로내 사유지·국유지 교환 추진

● 개 요

○ 추진개요

- 우리시 관내를 통과중인 제2중부고속도로 확장공사시 보상이 되지않은 사유지에 대하여
- 국유토지와 교환을 추진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사업기간 : 2016년 5월 ~ 2016.12.30.

○ 사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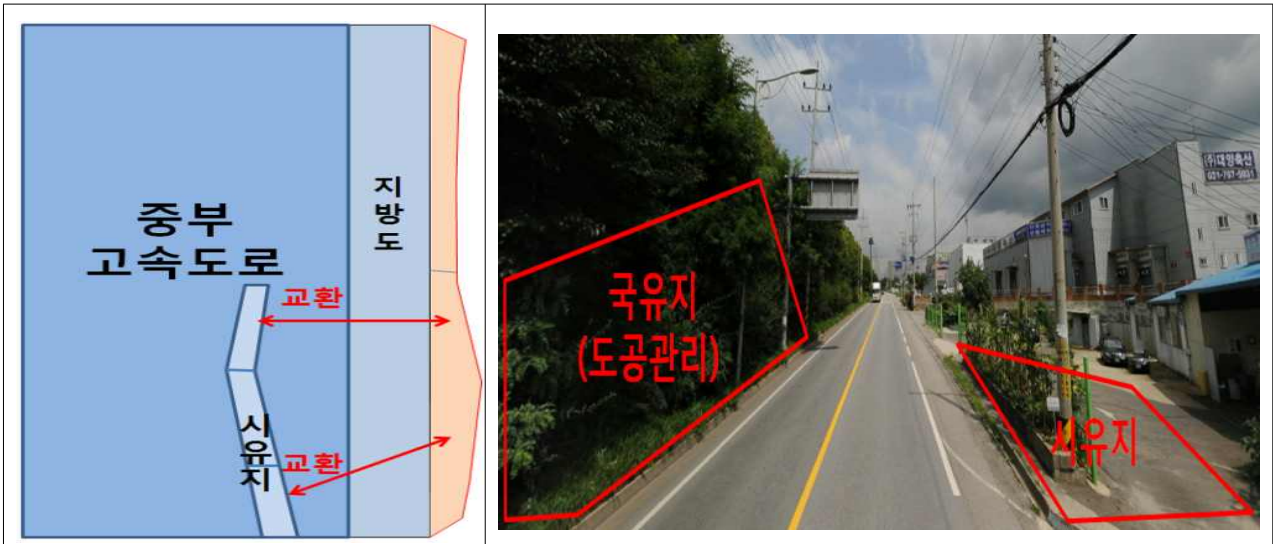
- 국유지 :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번지외 102필지/26,755m²
- 사유지 : 광주시 남한산성면 상번천리 ○○-○번지외 90필지/14,279m²

○ 추진내용

- 2016. 5. : 제2중부고속도로내 사유지 처리계획에 대한 의견요청
- 2016. 6. : 제2중부고속도로내 사유지 처리방안 보고
- 2016. 6. : 제2중부고속도로내 사유지 처리 협조요청
- 2016. 7. : 제2중부고속도로내 사유지 처리 세부사항 알림
- 2016. 8. : 제2중부고속도로로 국·사유지 교환목록 확인 요청
- 2016. 11. :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상정
- 2016. 12. : 국·공유지 교환 계약서 제출 요청
- 2016. 12. : 소유권 정리완료

● 교환방법

- 지방도를 기준으로 고속도로 부분과 지방도에 포함되지 않는 잔여지로 분할
- 고속도로 內 시유지와 분할된 잔여지 감정평가
- 시유지와 지방도를 제외한 잔여지 간 동일한 금액의 토지로 교환



● 준공당시 미보상사유

- 대체도로 건설(지방도 325호선)
- 국유재산법 제27조(처분등의 제한)상 행정재산 처분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등의 제한) 행정재산 처분불가

● 교환관련 근거

- 국유재산법 제5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 기대효과

- 1999년 9월에 완공한 제2중부고속도로내 시유지가 편입되어 당시보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현재까지 시유지 91필지14,279m²가 중부고속도로로 사용 되면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항으로,
- 중부고속도로 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와 협의결과 국유지와 시유지 교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관련법 절차를 거쳐 시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여,
- 그동안 재산관리관과 유지관리기관 불일치로 인한 도로점용, 매각 등의 주체 불분명 문제를 해결하고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공유 재산을 관리함으로 세외수입 증대효과.
(교환토지 감정평가액 45억원, 수입액 4천만원)

● 향후계획

- 국·공유지 실태조사 강화 운영
 - 매년 실시하는 국·공유지 실태 조사후 공유지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시 해당 관리청과 협의후 교환추진
 - 제2중부고속도로 내 시유지 이용실태 추가실시

-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활용을 위한 -

2. 광주시 우수정보시스템 타시군 보급·확산 추진

● 개 요

○ 추진개요

- 광주시가 자체 아이디어로 개발한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이 행정자치부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됨에 따라,
- 도입 희망기관에 본격 보급·확대하여 공동활용함으로써 시스템 중복 개발방지로 예산절감 및 신속·정확한 인허가 처리에 기여

○ 대상시스템 :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 선정일자 : 2016. 8. 25.

○ 보급비 : 시군 당 2백만원 ※ 도입기관에서 광주시 세입으로 입금

○ 도입시군 현황 : 22개 시군

- 경기도 시군(16개) :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안양시, 양평군, 가평군
- 타 시도(6개) : 통영시, 여수시, 장성군, 사천시, 원주시, 동해시

※ 경기도 내 시군은 2015년부터 확산하였고, 타 시도는 2017년부터 확산 추진중

○ 추진내용

- 2007. 12. : 광주시 인허가 통합검색 시스템 최초 개발
- 2009. 8. : 인허가 복합심의 시 시스템 본격 활용
- 2010. ~ 2013. : 시스템 기능 고도화
- 2014. 3. : 경기도 정부3.0 우수프로그램 선정
- 2015. 2. : 표준화 사업 추진(타 시군과 공동활용 가능한 환경 구축)
- 2015. ~ 2016. : 경기도 내 희망시군 보급·확산
- 2016. 8. : 행정자치부 우수정보시스템 선정(전국 확산 가능)
- 2017. 2. :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설명회 개최(전국 대상)
- 2017. 4. ~ : 도입 희망시군에 시스템 보급·확산 추진

●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개요

○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 각종 개발행위에 개발규모를 제한하고 있어,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는 편법행위, 소규모 누적적 난개발 방지를 위해 법으로 인·연접 운영
- 인·연접 대상은 신청지 포함 주변지역 과거 모든 인허가를 합산 검토이나, 인허가마다 개별시스템으로 운영되거나, 아직도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인허가를 종합 검토하는 시스템 부재로 민원처리 지연
- 이에, 인허가 관련 모든 시스템을 연계하고, 공간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인허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현행 법적 규제항목 검토 및 업무프로세스를 자동으로 협의처리 가능하도록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 시스템 주요기능

<p>인·연접 검토 가능한 지도기반의 인허가 분석 시스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산지/농지/개발행위/공장 등 인허가 관련정보를 통합·연계하고, 지적/항공 사진을 융합하여 인허가 신청지 기준으로 법에서 정하는 원점, 지번경계, 여러지번 경계, 용도지역/지구 등 사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경분석을 통해 인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시스템 ○ 또한, 인허가사항과 년도별 항공사진을 융합하여 목적사업 추진 사후관리 및 허가없이 불법 전용여부 확인
--	---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법 제51조(공유서비스의 지정 및 활용), 법 시행령 제62조(정보자원의 보급·확산), 법 시행령 제63조(정보자원의 보급에 따른 비용 청구)
- 행정자치부 예규 제1호(2014. 11. 25, 지방자치단체 우수정보시스템의 선정 및 공동활용 지침)

● 기대효과

- 우수정보시스템 공동활용 정책을 통한 시군간 공유·협업 추진
- 주민체감 및 파급효과가 큰 우수프로그램 보급·확산 추진
-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된 시스템을 보급비 2백만원으로 보급·확산함으로써 예산 절감 및 인력 효율적 운영
-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전국 확산으로 시군간 정보격차 완화 및 시스템 공동활용 활성화
- 광주시 자체 아이디어로 개발한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타 시군에 전파함으로써 광주시 이미지 제고

● 향후계획

- 2017. 8. : 우수정보시스템 보급·확산 설명회 개최(2018년 예산편성 대상)
- 2017. 10. : 도입 희망기관 수요조사
- 2018. 1. : 도입 희망기관과 광주시 간 협약 체결 후 보급·확산

● 수상실적

- 2014. 3. : 경기도 정부3.0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2014. 7. : 경기도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 2014. 10.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 연구과제 대통령상 수상
- 2015. 5. : 경기도 부단체장 창조적 정책사례 최우수상 수상
- 2016. 8. : 국토교통부 스마트 국토엑스포 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수상